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5항 중 “사회적 약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”를 “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.”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예산업무의 담당”을 “주민참여예산 업무담당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2년”을 “1년”으로 하되,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나 2년 이내에는 위촉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재임 중인 위원도 포함하여 적용한다.